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6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21 년도 상장회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2020 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 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세무 및 법률정보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1년도 상장회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1년도 상장회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출처: 금융감독원, 2020. 6. 22]


배경

I. 배경

- ▣ 2021 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 ▣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작년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앞당겨짐(12 월→6 월)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요

II. 개 요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재고자산 회계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자산의 측정 : 저가법 적용(항목별)<br/>*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li> <li>• 순실현가능가치 추정<br/>*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 보유목적 감안, 후속 평가</li> <li>• (업종) 제조업(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li> </ul>                          | <p style="text-align: center;"><b>무형자산 회계처리(영업권·개발비 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br/>* 개별 취득 및 사업결합 취득시 인식요건 충족여부</li> <li>•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평가의 적정성<br/>* 내용연수 적용 및 매기간 손상징후 검토, 회수가능액 등</li> <li>• (업종) 정보통신업</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국외매출 회계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수익인식모형)<br/>*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li> <li>• 재무정보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li> <li>• (업종)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li> </ul> | <p style="text-align: center;"><b>이연법인세 회계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br/>*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판단근거,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세액공제 내역 등</li> <li>•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과세소득, 기준액, 세율 등)<br/>*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또는 기대값</li> <li>• (업종) 전 업종</li> </ul> |

- ▣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상장회사의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금번에 선정된 4 가지 회계이슈는 2020 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1 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니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심사대상 선정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

III. 2021 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재고자산 회계처리  
의 적정성

1.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

□(대상업종)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재고자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C260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000 전기장비 제조업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회계처리 유의사항)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회계오류 예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는 보유 재고자산 중 다수의 품목이 진부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해당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여 평가·측정하지 아니함

제조업을 영위 중인 K사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OO 사업부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사업부에 대해서는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함

무형자산 회계처리  
의 적정성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선정배경)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으므로, 금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

□(대상업종) 방송 및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업종

무형자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J00000 정보통신업(58~63)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회수가능가액 측정

**회계오류 예시**

Q사는 前 최대주주 甲의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권을 취득가액 35백만원보다 3,965백만원 높이는 방법으로 乙,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권 4,000백만원으로 계상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N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3.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며,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 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

□(대상업종)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

국외매출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C210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0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00000 정보통신업(58~63)

M0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회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결실체간 거래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

\* 1단계(고객과의 계약 식별) → 2단계(수행의무 식별) → 3단계(거래가격 산정) → 4단계(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수행의무 이행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회계오류 예시**

D사는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

E사는 해외중속회사로부터의 재고자산 매입거래(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F사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등 수출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 기재하지 아니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4.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배경)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 상존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쏠 업종을 대상으로 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함을 유의

**회계오류 예시**

S사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증거가 없어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사용 이월결손금 등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

D사는 전기까지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식하지 않던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하면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잘못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A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향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IV.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기대효과)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Ⅱ. 유의사항 주요내용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요약**

[붙임 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 재고자산 회계처리(K-IFRS “제 1002 호(재고자산)” 등

- K-IFRS 제 1002 호에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저가법)으로 측정하며,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함
-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지만, 재고자산의 분류(예: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무형자산 회계처리(K-IFRS“제 1038 호(무형자산)”및“제 1036 호(자산손상)”)

- K-IFRS 제 1038 호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함
- 한편, K-IFRS 제 1036 호는 기본적으로 손상징후 검토결과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지만, 비한정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

□ 국외매출 회계처리(K-IFRS“제 1115 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및 “제 1024 호(특수관계자 공시)” 등)

- K-IFRS 제 1115 호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 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
  - \* 1 단계(고객과의 계약 식별) → 2 단계(수행의무 식별) → 3 단계(거래가격 산정) → 4 단계(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 5 단계(수행의무 이행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또한, K-IFRS 제 1024 호에서는 재무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거래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K-IFRS“제 1012 호(법인세)”/“제 2123 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등)

- K-IFRS 제 1012 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일시적차이 등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거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도록 규정
- K-IFRS 제 2123 호에서는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과세소득,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하며,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 입수시 관련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하여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함

연도별 회계이슈  
선정현황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2014~'2020년)

| 사업연도  | 중점점검 회계이슈  |
|-------|--|
| 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li> <li>-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li> <li>-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li> <li>-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li> </ul>                        |
| 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li> <li>-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기재의 적정성</li> <li>-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li> <li>-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li> </ul>                       |
| 201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li> <li>-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li> <li>-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li> <li>-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li> </ul>            |
| 201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li> <li>-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li> <li>-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li> <li>-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li> </ul>                     |
| 201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li> <li>-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li> <li>-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li> <li>-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li> </ul>                     |
| 201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li> <li>-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li> <li>-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li> <li>-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li> </ul>       |
| 202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리스크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li> <li>- 총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li> <li>-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li> <li>-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li> </ul> |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6. 23]

❖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선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19.4.1. 시행)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

개요

I. 개요

□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1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   |
|---|---|
| <p><b>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식별</li> <li>➢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li> </ul> | <p><b>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비유동의 엄격한 분류</li> <li>➢ 부채 상환 관련 추가적인 약정·합의내용 확인</li> </ul>          |
| <p><b>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 파악</li> <li>➢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li> </ul>               | <p><b>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li> <li>➢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차이 분석</li> </ul> |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II.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장(지분법)에서는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중소기업)이 관계기업(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종속기업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선정배경) 외부감사법(‘18.11.1.) 등의 개정으로 인해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또한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대상)이더라도 동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회사가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舊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연결범위를 적용하여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우려가 있음(시행시기 : ‘19.11.1.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사업연도부터)

\* 舊외부감사법 등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피투자 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지배기업)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에서 해당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

**회계오류 예시**

□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 A사는 2020사업연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인 종속기업(지분율 51%)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동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배제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동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

□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아닌 B사는 2020사업연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당해 사업연도에 설립된 종속기업(지분율 100%)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지 않음(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으로 평가)

□ 12월말 결산법인인 C사는 2020 사업연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거액의 매도가능증권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대상이 아님에 유의

◦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야 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

**회계오류 예시**

□ 상장에정기업인 D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투자자에게 부여된 동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E사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였음

-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를 유동부채(단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F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여 향후 10년간 회수가능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실현시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유동자산으로 분류

□ (선정기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표시될 수 있도록 자산은 유동자산으로의 분류를 엄격히 따지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유동자산의 분류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추정

-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

◦ 유동부채의 분류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과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서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재화에 대한 관리나 통제 불가, 수익금액 및 관련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의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 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과 K-IFRS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 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정배경)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아야 함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수익인식요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 관행 등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회계오류 예시**

□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사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당해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함에도, 원재료 구매대행거래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사가 특수관계자인 I사에 판매하는 상품은 제 3의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일정수수료를 수취하고 재판매하는 것으로 재화 제공에 관련되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은 채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함으로써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J사는 백화점에 위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동 백화점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과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

□ (선정기준) 자동차부품 또는 전자제품 등의 부품 제조업, 의류 또는 화장품 제조업 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거래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수익인식요건 충족 : 수익 인식시 재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재화에 대한 통제권 상실, 수익금액 등의 신뢰성 있는 측정 및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등 기준서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 본인 대리인 판단 : 본인으로 판단하여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되어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예: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부담)되는지를 점검

**영업활동의 현금흐름 공시 등의 적정성**  
**현금흐름 공시 등의 적정성** □(관련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 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K-IFRS “제 1007 호(현금흐름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 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K-IFRS 제 1007 호(현금흐름표)에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유의적인 비현금거래는 주석 등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및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이 존재  
 ◦ 유형자산 등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선수금·선급금과 미수금·미지급금의 증감거래는 투자활동 또는 비현금거래임에도 계정과목내의 거래별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

**회계오류 예시**

□ K사는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발생은 비현금거래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처리

□ L사는 투자부동산 처분 관련 선수금의 발생은 투자활동거래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처리

□ M사는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상계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총자산의 59%)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 (선정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미수금·미지급금과 선급금·선수금의 현금흐름 변동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거래의 성격이 아닌 계정과목(미지급금, 미수금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흐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 유입과 유출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각 활동(영업·투자·재무)별로 유의하여 구분 기재

**향후 계획**

**Ⅲ 향후 계획**

□ 한공회는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비상장법인 (붙임 1) 2020년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

| 대상 재무제표 | 중점 점검 분야  |
|---------|---|
| 2019년   |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공시의 적정성<br>② 우발부채 주식공시의 적정성<br>③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br>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연도별 감사보고서 (붙임 2)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주요 지적사례**

| 유형별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b>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b> | <b>24</b> | <b>11</b> | <b>23</b> | <b>22</b> | <b>18</b> |
|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 8         | 2         | 6         | 3         | 3         |
|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 1         | 1         | 2         | 2         | 1         |
| 3. 유형자산 과대계상                            | -         | 1         | 2         | -         | 3         |
| 4. 개발비 과대계상                             | -         | -         | 2         | -         | 1         |
| 5.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         | 1         | 1         | -         | -         |
|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 2         | -         | 1         | 4         | 1         |
| 7. 차입금 등 부채 누락                          | -         | -         | -         | 2         | -         |
| 8.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 -         | 1         | 1         | -         | -         |
| 9. 소송관련충당금 등 과소계상                       | 1         | -         | -         | -         | -         |
|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2         | -         | -         | 2         | 1         |
| 11.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1         | 1         | -         | -         | -         |
| 12.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 2         | 2         | 4         | 5         | 2         |
| 13.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 2         | 2         | 2         | -         | 4         |
| 14.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소)계상                 | -         | -         | -         | -         | -         |
| 15. 기타손익 과대(소)계상                        | 5         | -         | 2         | 4         | 2         |
| <b>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b>                  | <b>5</b>  | <b>2</b>  | <b>9</b>  | <b>3</b>  | <b>2</b>  |
| 1. 자산·부채 과대(소)계상                        | -         | -         | 3         | -         | -         |
| 2.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 5         | 2         | 6         | 3         | 2         |
| <b>C. 주식 미기재</b>                        | <b>14</b> | <b>10</b> | <b>12</b> | <b>9</b>  | <b>3</b>  |
|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 6         | 2         | 6         | 3         | -         |
|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 8         | 6         | 6         | 6         | 2         |
| 3. 투자유가증권 관련                            | -         | 1         | -         | -         | -         |
| 4. 기타 주식 미기재                            | -         | 1         | -         | -         | 1         |
| <b>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b>                  | <b>4</b>  | <b>1</b>  | <b>2</b>  | <b>-</b>  | <b>2</b>  |
| <b>E. 법규 위반사항</b>                       | <b>4</b>  | <b>11</b> | <b>5</b>  | <b>1</b>  | <b>2</b>  |
| <b>합 계</b>                              | <b>51</b> | <b>35</b> | <b>51</b> | <b>35</b> | <b>27</b> |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기획재정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 '20.6.25.(목)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1. 금융투자소득 도입 ('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 (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 ~ 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 (기본공제) ①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②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증권거래세 조정

2. 증권거래세 조정 ('22년 ~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 ('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Delta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Delta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보완조치

3. 보완조치

(1)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2) 주식 양도에 대해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국제세원-1337, 2020.04.24)

(사실관계)

- 신청인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국법인의 국내활동에 대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국내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영상공급 및 대표자의 방송출연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영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영국법인은 해외 송출하던 유튜브 영상을 국내 방송사에 공급하거나, 대표자의 브랜드 온라인 광고모델, 방송출연 및 포럼 연사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질의요지)

-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의 범위
-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컨텐츠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국법인의 대표자(비거주자)를 모델로 해외(제3국)에서 광고를 촬영하여 전세계로 송출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를 영국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 구분

**【회신】**

「한·영 조세조약」 제17조에 규정한 예능인(연예인)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하는 인적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컨텐츠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등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영국거주자 예능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될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국법인 소속 예능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는 예능인·체육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 2020.05.19)

(사실관계)

- A법인은 00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18.00.00.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었고
  - '19.00.00.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서울시 강남구)에서 수도권 밖(대전광역시 유성구)으로 이전함.

☞ B법인은 00운영업 및 00컨설팅을 주목적으로 2006.0.00. 서울시 강남구를 본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0.00. 00운영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

(질의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후
  -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적용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감설>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을설> 분할후 사업영위기간만 계산

**【회신】**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업 무 소 개

|  |   |
|--|---|
|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br>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
| 발행인  | 한울회계법인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